

2025년 제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「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14조에 따라 2025년 제2차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3. 24.

군 포 시 장

I 용자개요

- 용자규모 : 75억원 내외(연 300억원)
- 자금종류 : 운전자금
- 용자한도 : 업체당 3억원 이내(기 대출잔액 포함)
- 용자기간 : 1 ~ 3년(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)
 - ※ 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
- 용자대상 :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

- 지원대상
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
지원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
- 제외대상
 - 가. **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**
 - 나. 국세·지방세 체납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다. 실제 공장소재지와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다른 업체
 - 라.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 업체
 - 마.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
 - 바. 용자지원 결정 후 군포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
- ※ 2020년부터 시행된 '최근 2년(8분기) 이내 군포시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지원 제외' 항목 한시적 유예

- 이차차액보전 : 2.0%(군포시 우수기업, 여성기업, 청년기업 0.5% 가산)

- 용자취급기관 :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및 관내 지점
 - 용자금리
- < 개인사업자 >

구 분	협약금리	이차 보전	기 업 적용금리	대출기간
보증서	기준금리 + 1.52% 이하	2.0%	협약금리 -이차보전	1년(일시상환) 2년(일시상환) 3년(1년거치 2년균등상환)
부동산 (기타)	기준금리 + 2.18% 이하			

< 법인사업자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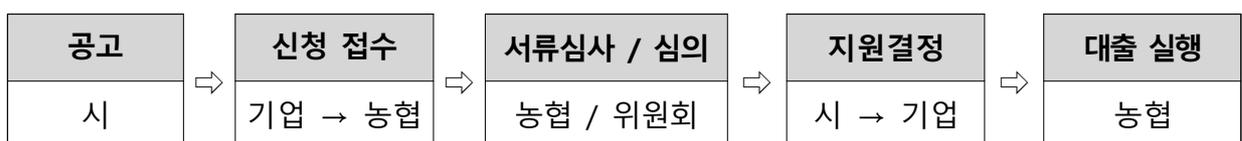
구 분	협약금리 및 신용등급		이차 보전	기 업 적용금리	대출기간
	5C 이상	6A,6B,6C			
보증서	기준금리 + 1.52% 이하	기준금리 + 1.85% 이하	2.0%	협약금리 -이차보전	1년(일시상환) 2년(일시상환) 3년(1년거치 2년균등상환)
부동산 (기타)	기준금리 + 2.18% 이하				

※ 기준금리 : MOR*

* MOR(Market Opportunity Rate) : 금융기관의 시장 조달 금리로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 등의 변동주기가 있음

II 신청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4. 1.(화) ~ 4. 17.(목) 16시까지
※ 단, 토·일요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 제외
- 접수처 :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*(031-390-5631, 5650) 및 관내지점
*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-5, 2층(산본동, 농협건물)
- 신청서 및 구비서류 : 붙임참조(또는 군포시기업포털에서 서식 다운)
※ 군포시기업포털(<http://www.gunpo.go.kr/biz/index.do>) → 기업지원 → 지원소식
- 지원절차



Ⅲ 용자대상 선정

- 기업의 건실도, 성장 가능성, 지역경제기여도 등 평가
 - ※ 지역경제기여도 : 업력, 군포시민 채용 비율, 본사 및 공장 군포 소재 등
-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 규모보다 신청금액이 많은 경우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최근 2년 이내 육성자금 미지원 기업 우대(가점 10점 적용)
- 선정통보 : 2025. 4. 30.(수)까지 개별 통보

Ⅳ 유의사항

- 동 지원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용자하는 것으로 군포시의 육성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도 취급은행의 자체규정에 의거 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**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금(이자 지원금)을 회수**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
 - 군포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 - 휴업, 폐업, 파산 등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
 - 군포시 관내로 이전하였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 -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
 - 자금지원 대상 업종 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등